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59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의자 : 김상훈 · 김위상 · 김소희  
엄태영 · 조지연 · 윤한홍  
이현승 · 서명옥 · 이달희  
권성동 · 김희정 · 강대식  
이종욱 · 박충권 · 김재섭  
김형동 · 이상휘 · 신동욱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

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  
의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이하 이 조에서 “무역보험기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2. ~ 4. (생략)

② ~ ④ (생 략)

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⑥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신용보증  
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이하 이 조에서 “무역보험기금”이라 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 ⑥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무역보험기금-----

<p>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 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 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 다.</p> <p>⑦ ⑧ (생략)</p>	<p>----- ----- ----- ----- -----. ⑦ ⑧ (현행과 같음)</p>
--	--